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8. 4. 16 ————— 이상은의원외6인

나. 회 부 일 자 : 1998. 4. 22

다. 상 정 일 자 : 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98.5.4)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상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근간인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발언제,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 그동안 동 규칙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과 타 지방의회에서 시행중인 수범사례를 수용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원의 등록을 임기초에 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면 임기 개시전이라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토록 함(안 제2조)

-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날의 전일까지 재임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5일이내에 집회하여 차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토록 함(안 제9조 제2항)
- 의원의 본회에서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의중인 의안 및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함(안 제33조의 2)
- 현행 규칙의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법에 의한 『정부에 대한 질문』에 준하여 구정질문 관련규정을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며, 구정질문 대상, 질문시간 제한 및 질문요지서 제출 등 구정질문 관련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임기초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의원 등록을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면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토록하여 총선거 후 최초집회 준비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2년임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임기만료 전 5일이내에 집회하여 선출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5분자유발언제 신설 배경 및 동기와 기대효과는?
 - ▷ 구정질문 기회의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국회 및 타 지방의 회의 수범사례를 수용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하여 본회의의 활성화를 도모
- 5분발언에 대한 답변, 해명 기회 필요성 여부?
 - ▷ 별도 명문규장 불필요, 현행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사진행 관계 판단 결정
- 본 규칙위반시 제재 방법은?
 - ▷ 회의규칙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제재가능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